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0. . .	
연 월 일	(제 회)	

수 산 식 품 산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1.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라.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활동상황 보고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 마.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 바.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 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및 선상가공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2항제15호·제40조제2항제16호)
- 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40조제6항)
- 자.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40조제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 라. 기 타 : 1)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2) 입법예고 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3조(경미한 변경 사항)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따르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6.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제조·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기술
2. 수산식품의 품질·영양·위생관리
3.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창업
4.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 등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④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정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6항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비용

4.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계획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운영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수산물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물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하였을 때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해외수산식품 인증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해외수산식품 인증지원 분야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수출 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의 해당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일 때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4.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

로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
2.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품질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브랜드 및 용기·포장디자인의 개발·제작
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품평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6.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컨설팅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정부수매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을 축조·사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굴 생산·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1항 및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
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
의 어묵 등)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
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

업.

4. 기타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 하여 비료용·호료(식품형태 유지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용·사료 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의 수산동물유 가공업 및 냉동·냉장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④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때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생산품목 제한 등의 처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 생산자(「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 포함)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공급 사업
2. 어업 생산자(「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 포함)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운송과 관련된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세미나·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 지원 경비의 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공급 등에 필요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4.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생산·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생산·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재료 계약생산 등에 대

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교육·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수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는 있는 자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4.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사업
2. 수산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수산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수산식품 판매점·음식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수산식품 음식점의 평가·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수산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수
산식품성분표 등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을 국민이 활
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
및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9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지정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분야

제20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수산물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을 지정하려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2.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신청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

였을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영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물명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바로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수산물전시회, 수산물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전수시설의 신설·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등 개최
5. 대한민국수산물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물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물

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제20조제1항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7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물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수산물 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수산물

품 제조·가공·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의 종사 여부와 기능 보유 정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할 때는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보유한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 등을 전수·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기록·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활동상황 점검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활동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가공·조리 등의 재연 가능 여부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의 사실여부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운영현황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점검은 현장·서류·지정 제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활동상황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이하 "산업표준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수산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표시방법·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신설·변경하거나 폐지한 때 및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신설·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 표준규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① 제30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

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는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4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 이상의 원재료가 같은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같은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 %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같은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바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때는 그 사실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국가인증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제38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수산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수산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수산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산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침의 보급 등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보고의 접수 및 관리
7.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 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업표준의 고시
 - 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호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 라.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2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0호중 심의회·기술심의
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상임전문위원의 임명·위
촉 또는 지명

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전
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
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자.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
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9.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공표

10.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제공 또는 교육 및 홍
보

11.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에 대한 적
합성 검토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의 적합 여
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라.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1호에 제품수거 명령

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의2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3.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4. 법 제30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의 운영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

6.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

관에 대한 사후관리

8.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 제품의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
 9.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의 취소
 10.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수납
 - 나.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수납
 11. 법 제42조제1항제4호(제13조제2항제3호 선상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 제7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47조제1항제1호(제13조제2항제3호 선상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호부터 제6호, 같은 항(제13조제2항제3호 선상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
 14.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의 제정,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의 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
2. 법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문(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수산식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식품 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제4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4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

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정관기재사
항 등에 대하여 2021. 2. 19.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국가인증 수산식품에 대하여 2
021. 2. 19.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별칙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 2.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신고·지정 등의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산물가공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선상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수산피혁가공업 또는 해조류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기타 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상임전문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보아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

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및 제1호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물산업 관련 산업

가. 수산물 포장용기 제조업, 수산물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수산물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수산물 도소매업 등 관련 서비스업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를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어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농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축산물"을 각각 "농·축산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수산물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를 "사항에"로 하고, ", 수산물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따른 우수 식품등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중 2. 개별기준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

계와 관련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면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각 법령의 규정을 갈음하
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제5조제9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제9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
- 1)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 2)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영업소 폐쇄			
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 법 제34조제6항(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제1항제5호 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아.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